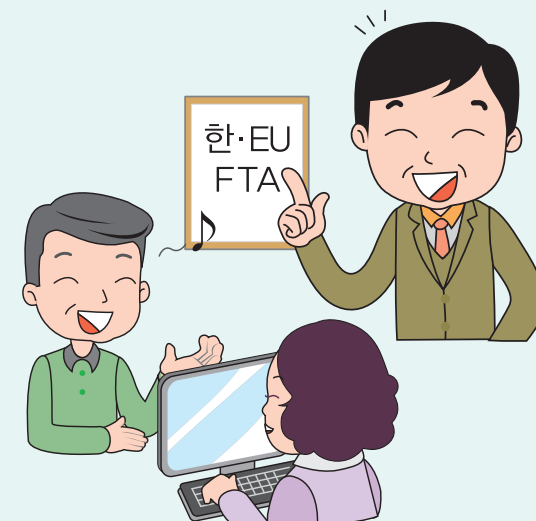




한·EU FTA 한·EU FTA 활용하기



<http://www.customs.go.kr>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302-701, Korea



I. 한·EU FTA 발효 및 대상국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	4
• 현재 EU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 한·EU FTA는 2011.7.1일자로 잠정 발효된다고 하는데, 정식 발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II.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선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6
•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무엇인가요?	
• EU로 수출하려는 모든 업체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하나요?	
• 인증수출자 종류, 지정기관 및 유효기간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요건을 비교해 주세요.	
• 인증 지정받은 업체가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III.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11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원산지증명서 양식이나 유효기간 등은 어떻게 되나요?	
IV. 특혜관세 적용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13
• 특혜관세 신청시 수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주었다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EU에서 수입하려는 모든 물품에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V. 한·EU FTA 협정의 원산지 검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	15
• 특혜관세 진위 여부를 위한 검증 방식은 무엇인가요?	
• 원칙적으로 간접검증방식이라 하였는데, 다른 방식은 없나요?	
•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요청 없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나요?	
• EU 세관의 원산지 검증 주요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VI. 한·EU FTA 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18
• 수출물품이 한국산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특혜 원산지 기준 중 실질적 변형기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 기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미소기준(De Minimis)이 규정되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이외에도 직접운송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우리나라의 주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한·EU FTA로 관세환급제도에 변동이 생기나요?	
•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포함되나요?	
VII. 알아두면 좋은 자료 -----	24
• FTA 관련 문의처	
• FTA 협정관련 자료제공 사이트	

I. 한·EU FTA 발효 및 대상국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현재 EU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 EU(European Union)는 27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의 정치, 경제 공동체를 뜻합니다.
-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EU FTA는 2011.7.1일자로 잠정 발효된다고 하는데, 정식 발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잠정발효는 정식발효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와 문화협력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으며, 이 두가지 내용은 EU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정식발효까지는 EU 회원국 모두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상 2~3년이 더 걸리지만 잠정발효라고 하더라도 EU의회의 비준동의만으로 협정문의 99%는 미리 발효가 되는 것이어서 정식발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II.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선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무엇인가요?



-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EU로 수출하려는 모든 업체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하나요?



-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습니다.
- 즉, EU로 6,000유로 초과 수출하는 업체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

협정별	C/O 발급형태	혜택
한·칠레	자율발급제	미적용
한·EFTA	자율발급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통산 INVOICE)에 세관인증번호 기재시 수출자 서명 의무 생략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기관발급제	C/O 발급절차 간소화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한·EU	자율발급제	6천 유로 이상 수출시 세관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C/O 자율발급 가능

인증수출자 종류, 지정기관 및 유효기간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적용대상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6단위
유효기간	3년(연장3년)	3년(연장3년)
인증기관	6개 본부서관(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대구·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6단위별 협정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요건을 비교해 주세요.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수출국과의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 6단위)을 수출하는 자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는 자	좌동
3	원산지 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자	좌동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보정요구 받은 경우 제외)이 없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인증 지정받은 업체가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인증받는 범위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자율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다가 적발시 곧바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협정·품목번호 6단위에 대해서만 혜택이 부여되므로 그 이외의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인증시 제출한 서류 및 인증 후 작성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예 :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에 대한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 인증취소와 시정명령의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받고 인증 유효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곧바로 인증이 취소되게 됩니다.

Ⅲ.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 어 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2) preferential origin.

원산지증명서 양식이나 유효기간 등은 어떻게 되나요?



- 원산지증명서는 한·EFTA FTA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은 인보이스 신고(Invoice Declaration) 방식이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사이트의 자료실 서식모음란에 해당 서식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FTA 별 원산지증명 방식 및 유효기간

협정	증명방식	유효기간
한·칠레 FTA	양국간 통일증명양식	2년
한·싱가포르 FTA	양국간 각자 증명양식	1년
한·EFTA FTA	송품장 신고방식	1년
한·아세안 FTA	협정상 규정양식(AK양식)	6개월
한·미 FTA	정형양식없음	4년

IV. 특혜관세 적용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특혜관세 신청시 수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주었다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수입업체가 세관에 특혜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고 법령상 세관이 요구할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그러나, 수입자는 특혜관세를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FTA 관세특례법)

EU에서 수입하려는 모든 물품에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 관세특혜를 위한 필수서류가 원산지증명서인 것은 사실이나, 소액의 개인용 물품과 여행자 개인수하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금액한도가 정해져 있어 개인용품 또는 개인수하물의 경우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한·EU FTA 뿐만 아니라 각각의 FTA는 이러한 면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FTA	기 준
한·칠레	- 가격이 미화 1,000달러 미만인 상품의 상업적 및 비상업적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한·싱가포르	- 총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미만인 상품의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한·EFTA	- 개 인 소 포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미만,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500유로 미만 - 여행자 개인수하물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미만,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1,200유로 미만
한·ASEAN	- 당사국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FOB 가격 200달러 미만 - 우편으로 송부된 물품으로 FOB 가격 기준 미화 200달러 미만
한·미	-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미만인 상품의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상품
한·EU	- 개 인 소 포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미만,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500 유로 미만 - 여행자 개인수하물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미만,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1,200유로 미만

V. 한·EU FTA 협정의 원산지 검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특히 관세 진위 여부를 위한 검증 방식은 무엇인가요?



- 원칙적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간접검증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수입국 관세당국은 무작위 또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구할 수 있고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통보하게 됩니다.
- 수출국 관세당국이 10개월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간접검증방식이라 하였는데, 다른 방식은 없나요?



- 간접검증을 원칙으로 하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동검증 근거를 도입함으로써 협정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즉, 수입국 관련 공무원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얻고 원산지 검증에 참석할 수 있는 공동검증 방식이 가능합니다.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요청 없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나요?



- 상대국에 검증요청 없이도 수입국 관세당국이 특혜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다음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원산지 규정상 직접운송 요건 불충족
- ② 당초 부정확한 방법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증명서 제출
- ③ 원산지증명서가 비당사국 수출자에 의해 발급
- ④ 수입국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EU 세관의 원산지 검증 주요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① 오만산 수산물의 특혜원산지 오기(misdescription) 사례

- 오만은 GSP에 의해 유럽공동체로 물품을 수출할 경우 관세특혜를 받습니다.
- '05년 EU 회원국들에 의해 오만에서 EU로 수출되는 수산물 원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OLAF 조사 결과 상당량의 수산물이 제3국 선박에 의해 포획된 것이 확인되어, 수산물의 원산지가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 또한 '06년 EU 회원국과 오만 정부의 협조 하에 OLAF가 4개의 오만 수출 회사를 조사한 결과, 유럽공동체로 수출되어 원산지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오만산 수산물의 상당양이 GSP 특혜관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8개 회원국으로 수출된 수산물의 탈루 관세액은 100만 유로를 초과하였습니다.
- 관련 국가는 EU 수입자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에 있으며 탈루된 관세 추징 절차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② 반덤핑관세 회피를 위한 TV 원산지 허위 신고 사례

- '01년 9월 유럽무역위원회는 2개 아시아국가에서 수입되는 컬러TV제품의 원산지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 표기를 아시아의 제3국으로 표기 한 것입니다.
- '02년 12월 제3국의 세관당국에 협조요청을 하였고, '03년 2월 아시아 제조업체에 대해 방문조사, '04년 1월 OLAF와 4개 세관당국이 함께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TV 수출업자들이 실제로 원산지를 속였음을 회원국 세관에 통지하고 반덤핑관세를 추징하였는데 무려 1,800만 유로였습니다.

VI. 한·EU FTA 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수출물품이 한국산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해당 수출물품의 HS코드를 찾은 다음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한 뒤, 그 결정기준에 충족해야 한국산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FTA-PASS" 시스템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 무료 다운로드를 원하시는 분은 국제원산지정보원 (<http://www.origin.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혜 원산지 기준 중 실질적 변형기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 기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한·EU FTA에서의 부가가치기준은 공장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허용된 역외산(비원산지) 부품 사용 비율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하(예:공장도가격 기준의 45%)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소기준(De Minimis)이 규정되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 완제품이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양국이 합의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역외산 재료가 공장도가격의 10%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한 규정입니다.
- 다만, 섬유류(50~63류)에 대해서는 일반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품목마다 다른 미소기준(8~35%, 중량 및 공장도가격기준 등 다양)을 적용하게 됩니다.

※ 한·EU FTA 원산지 협정문의 기타 주요 내용

- 대체 사용 가능한 재료 및 물품의 원산지 판정 특례를 인정
-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기준 도입
-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가격의 15% 이하인 경우 세트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제품생산에 사용되었으나 최종재에 직접 투입되지 않은 연료, 도구 등의 재료는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이외에도 직접운송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양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 만일 한·EU 양측이 아닌 제3국(경유국)에서 ① 단순하역 작업이나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②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주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 완성된 자동차의 경우 역외산 부품비율이 45% 이하이고, 자동차 부품은 역외산 부품비율 50% 이하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중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EU FTA로 관세환급제도에 변동이 생기나요?



- 한·EU FTA가 발효되더라도 현행 관세환급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도입됩니다.

|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주요 내용 |

·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 기본원칙 : 상대국 동종제품과의 경쟁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 (sourcing pattern)의 변화가 입증될 경우 발동가능
- 구체적 요건 : 1)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2)최종재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대세계 수입증가율(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국한)이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증가율을 크게 초과
- 경감요인 : 역외산 원자재의 수입증가가 국내 소비 증가 등 상대국 수출용도 이외의 수요에 기인한 경우, 상기 증가율의 경감요인으로 고려
- 상대국 동종제품과의 경쟁 조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

·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 절차

- 관세환급제도 검토 결과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일방 당사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제한을 위한 협의 요청
- 발동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양측간 이견이 있을 경우, 한·EU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객관적인 패널 3인을 구성하여 결정)
- 패널에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품목에 대해 환급되는 관세를 5%로 제한
* 예 : 현재 실행관세율이 8%인 품목의 경우 5%만 환급

·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검토 실시

-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환급제도에 관해 공동으로 검토 실시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포함되나요?



-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의정서 및 동 부속서에 규정하였습니다.
- 한·EU 양측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 역외가공지역(OPZ)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 OPZ 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정 요건하에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 관세를 부여받으며 개성공단 외 다른 지역도 OPZ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VII. 알아두면 좋은 자료

FTA 관련 문의처

- 협상 관련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 02) 2100-8110
- 법령 관련 : 재정경제부 양자협력과 ☎ 02) 2150-9355
- 통관 관련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042) 481-3222, 3284
관세FTA고객지원센터 ☎ 1577-8577 <http://fta.customs.go.kr>

FTA 협정관련 자료제공 사이트

구분	주소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http://www.origin.or.kr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fta/main.jsp
무역협회	http://fta.kita.go.kr
FTA 활용 종합지원포털	http://www.fta-usa.kr
한국관세사회	http://fta.kcba.or.kr
FTA 종합지원포털	http://fta.korea.kr

한·EU FTA

미리 알아보는 한·EU FTA 특혜관세

발행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발행일 : 2011년 5월

STEP Design
042. 624. 0924

이 책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042-481-3222)